

정 관

재단법인 순환기 연구재단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지방주도의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하여 순환기질환에 대한 치료 및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순환기질환의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지원, 지역바이오훈 산학협동연구모델개발, 지방출신 유능임상의사 및 기초과학자의 발굴지원, 지역중심순환기센터의 건립추진, 국가 및 지역의료정책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국민 보건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환기연구재단(Circulation Research Foundation: CRF)이라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-23 한라시그마 타워 1005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교류 및 지원사업

가) 순환기중재시술 또는 순환기계 질환에 관한 학술행사 및 교류 지원

① 순환기중재시술 또는 순환기계 질환에 관한 정기적인 학술행사를

개최한다.

② 순환기증재시술 또는 순환기계 질환에 관한 정기적인 연구모임을 갖는다.

③ 순환기증재시술 또는 순환기계 질환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.

나) 순환기질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지원

다) 순환기질환에 관한 기초연구 및 다기관 임상연구 지원

라) 지역중심의 연수강좌 또는 학회개최 지원사업

마) 지역의료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의료체계 및 의료관리프로그램의 개발

2. 지역의료산업의 모델개발

가) u-헬스시스템의 개발

나) 원격진료 및 응급진료시스템의 개발

다) 그린닥터스와 연계한 원격화상진료체계개발

3. 기타 장기적 역점사업

가) 지역중심 순환기병센터 또는 노인병센터의 건립추진

나)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연수지원사업

다) 기타 장학사업 및 순환기질환에 관한 연구지원등을 기본계획으로 하며,
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
제 5 조 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 6 조 (재산구분)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다음 각호의 (가)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 - 가. 설립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- 나.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- 다. 보통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.
 - 라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· 증여 · 교환 · 임대 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-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1의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8 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 10 조 (회계의 구분 등)

-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

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-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 11 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12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3 조 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 법인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 사업 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제 14 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5 조 (임원의 보수제한)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 상근하는 상임이사의 경우는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)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 2. 이 법인의 임원
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-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7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-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장 1인
 2. 이사 5인 내지 15인
 3. 감사 2인이내
-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중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.

제 18 조 (상임이사)

-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9 조 (임원의 임기 등)

-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-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20 조 (임원의 선임방법 등)

-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
- 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

초과하지 못한다.
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22 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-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 23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4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-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5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고하는 일
4. 제3회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

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이 사 회

제 26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

1. 법인의 예산, 사업계획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27 조 (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 28 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 충돌 관계(conflict of interest)가 있는 사항

제 29 조 (이사회의 개최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,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개최 한다.

제 30 조 (이사회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1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33 조 (의사록)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의사록에는 회의경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법인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고문단)

- ① 법인의 주요정책과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단을 둘 수 있다.
- ② 고문단은 국내외 인사로 법인의 연구 활동에 조언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며,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③ 고문위원의 추대 및 임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5 장 사무조직

제 35 조 (사무국) 이 법인의 사무국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 36 조 (정관의 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7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사업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, 부산시에 귀속시킨다.

제 39 조 (준용규칙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 40 조 (규정의 제정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1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다만,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할 수 있다.

제 42 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직위	성명	주소	임기
이사장	김무현	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더샵 아텔리스 102-4201	4년
이사	김영조	대구시 수성구 범어 1동 궁전맨션 2-1307	2년
"	채성철	대구시 중구 대봉1동 111-1 청운맨션1-503	2년
"	정명호	광주시 서구 풍암동 330 금호 102-901	4년
"	정동근	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화승 삼성 APT 12-2001	4년
"	차광수	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 시티 237-1202	4년
"	임도선	서울시 대치동 개포 우성APT 3-302	4년
"	강진수	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리나 106-301	2년
"	김경진	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APT 108-704	2년
감사	설상철	부산시 남구 문현3동 삼성힐타워 C-1003	2년
"	권철진	부산시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220-1604	1년

부 칙

제 1 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설립당국의 임원은 별지의 임원 명부와 같이 한다.

제 3 조 본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다음과 같다.

직인	이사장인	계인